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- (1)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.
- (2)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또한 어르신이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시,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.
- (3) 어르신이 직원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직원 이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.
- (4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(5)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,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 -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 -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인정유효기간 내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, 갱신 시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요구가 없고 계속적으로 갱신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갱신된 인정유효기간 내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.
 - ③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어르신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 -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. 계약목적

: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주야간보호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

-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
-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(100분의 15)비용을 전액 면제한다.
-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(100분의 15)에서 40% 또는 60%를 경감한다.
-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⑤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.
-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 - 가. 식사재료비
 - 나.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
 - 2.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, 치료비,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3.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(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-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-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
-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

(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
-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-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
(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)
-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5. 준수사항

- (1)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- (2)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에서 표준하여 배부한 계약서를 사용한다.
- (3)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.

- (4)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

6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- (1)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때
- (2)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(3)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(4)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
- (5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(6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(7)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되었을 때
- (8)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(9)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